•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구정방향■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07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부록 제689호 2012. 5. 7.(월)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362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363호(송도영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7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370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2-371호(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18

회람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2 - 362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22661호)』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22661호)

3. 주요내용

○ 국외숙박비 「실비 정산제」 준용 근거 마련

- 인상(24.2%)된 단가를 상한액으로 정부구매카드 등을 사용하여 현지 숙박비를 결제한 뒤 복귀하여 카드매출전표 등에 따라 실비 정산
- 할인정액 지급 : 여비규정 ‘별표 4’에서 정한 숙박비 실비상한액의 85%를 지급할 경우 실비정산을 하지 않고 정액으로 선 지급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2년 5월 23일까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032-810-7082, FAX 032-810-7109, 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건의, 개선사항 등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계획 없음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하며,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 "소속 장관" ----------.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3. 영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은 "「인천광역시연수구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및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4. 영 ----------같은----별표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

<신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7. 영 ----------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8. 영 ---------- ------지도직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하며,----------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2 - 363호

송도영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송도영남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5. 7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공 람 기 간 : 2012년 5월 7일 ~ 2012년 5월 21일
2. 공 람 장 소 : 연수구청 4층 건축과(☎ 032-810-7746),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6-4 컨테이너, ☎ 032-831-8204)
3. 공람내용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공람
4. 의견서 제출장소 : 연수구청 건축과
5.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의 명칭 :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시 행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대
   다. 시 행 면 적 : 26,609.1㎡
   라.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마. 사업시행자
      1) 명칭 : 송도영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이은돈)
      2)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영남아파트 단지내 컨테이너박스
   바.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1) 건폐율 : 23.14%, 용적율 : 244.95%, 연면적 : 87,147.78㎡
      2) 아파트 8개동(지상20층/지하3층) 49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주택규모 : 60㎡이하 79세대, 60㎡~85㎡ 415세대
   사.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아.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도로(3,728.8㎡), 주차장(160.2㎡), 공원(1,039.3㎡)
6. 관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의 세부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공람내용은 관련법령에 의한 관계기관(부서)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2 - 370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2011.11.01.)으로 “음주운전 3진 아웃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에 대한 비위유형을 추가하고,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보완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 [행정안전부]

3. 주요내용

○ 음주운전에 대한 독자적·구체적 징계기준 신설 및 강화(제2조제1항)

-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서 음주운전 비위의 유형을 별도 추가 (안 별표 1)
-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안 별표 1의3)

※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 파면의 배제징계(3진 아웃제) 도입

○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제2조제2항)

-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서 성폭력, 성희롱 외에 성매매 비위의 유형을 추가(안 별표 1)

○ 금품·향응 수수 등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구체화·세분화 (안 별표 1의2)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2년5월 29일까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032-810-7081, FAX 032-810-7109,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건의, 개선사항 등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참고자료

붙임1)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1】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 1의2의 징계부과금”을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4의 징계부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표4와 별표5를”을 “별표 1의2와 별표 1의3을”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표 1의2로, 별표 5를 별표 1의3으로, 별표 1의2를 별표 1의4로 하여 이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개정규정에 따른 처리기준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1]<2012. . . 개정>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1의2와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 1의3과 같음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1의2]<2012. . . 신설>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 기준(제2조제1항 관련)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1.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				○		
	4)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능동)			○			
	5)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수동·능동)		○				
	6) 300만원 이상(수동·능동)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수동·능동)		○				
	4) 100만원 이상(수동·능동)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1) 50만원 미만(수동)		○				
	2) 50만원 미만(능동)	○					
	3) 50만원 이상(수동)	○					

※ 금품 등 수수액이 소액이라도 2회 이상 및 정기·상습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은 이 규정 제3호를 준용한다.

[별표 1의3]<2012. . . 신설>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징계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직렬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5.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음주운전(사면된 전력포함) 횟수는 포함되지 않으나 징계양정 결정시 참조한다. 6. 이 규칙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횟수에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중 사면된 전력도 포함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경·중징계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별표 1의4]<2012. . . 개정>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의 기준) ①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4의 징계부가금 ----------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1.1.1.1.1.1.1. ③ (생략)	1.1.1.1.1.1.2. ③ (현행과 같음)
제4조 (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제4조 (징계의 감경) ① ----------

현 행	개 정 안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음주운전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 ----------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1.1.1.1.1.1.3.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나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나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4와 별표5를 각각 적용한다.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 ---------- ---------- ---------- ---------- ---------- ---------- ---------- ---------- ---------- ------별표 1의2와 별표 1의3을----------
1.1.1.1.1.1.4. ② (생략) 1.1.1.1.1.1.5. ③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1.1.1.1.1.6. 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2-371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7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일부 개정이유

❑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위해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등의 필요한 사항을 반영 ·개정함으로서 우리구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안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유관기관의 협력 등에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한 “평생교육협의회” 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함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안 제16조의1부터 제16조의4까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강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의 관련사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5. 30.(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

○ 연 락 처 : 전화 032-810-7121, FAX 032-810-713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개정(안)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 담당 국장
2.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 소속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4.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 및 기관 · 단체의 장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의1부터 제16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수강료 징수)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별표1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의2(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4.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제16조의3(수강료 반환)① 제16조의1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강신청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1. 프로그램 모집정원의 3분의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구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운영시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

운영과정	수강료 (프로그램당)	비고
12주이상	100,000원 이하	○ 주1회 2시간 기준 ○ 주1회 2시간 초과 또는 미만 프로그램은 기준액의 50%범위에서 가감 할 수 있다
12주미만~8주이상	60,000원 이하	
8주미만~4주이상	40,000원 이하	

[별표 2]

수강료 반환 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1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 시작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비 고	총 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평생교육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및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2. 그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생략)	**제7조(구성)**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 담당 국장 2.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동부교육지원청 소속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3.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4.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임기 등)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8조(임기 등)①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장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1~제16조의4 (신설)	**제16조의1(수강료 징수)**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별표1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의2(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4.「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수강료 반환)① 제16조의1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강신청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1.프로그램 모집정원의 3분의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구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 신청인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운영시간)**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